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특별감독 착수

고용부, 감독반 편성 위법여부 조사 ... 공정안전·보건·안전·관리팀 구성

고용노동부가 1월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2월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했다고 2월7일 발표했다.



감독기간은 2월20일까지로 정했으나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실시하는 흔치 않은 조치”라며 “삼성전자는 그동안 관리가 잘되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별감독반은 고용노동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인력 23명으로 꾸려졌으며, 이밖에 관련분야 전문가인 교수 3명도 합동조사반 형태로 참여했다.

감독반은 1월28일 사고 신고 직후 활동한 현장조사팀의 재해조사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생산라인 6곳 등 전체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보건·안전·관리 등 4개 분야로 팀을 나누어 정밀 감독하고 있다.

공정안전관리팀은 공정안전보고서(PSM)를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담은 PSM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팀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대로 작성하고 게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화재 폭발 시 방재요령 등을 기록한 자료이다.

안전팀은 안전장치·방호 장비 등에 이상은 없는지, 낙하·협착 등 위험요인에 대비해 법에 규정한 대로 안전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며, 관리팀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과 교육, 협력기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감독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로 협력기업 직원이 숨진 만큼, 시설관리를 하도급기업에 맡기면서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특별감독에서 적발한 법위반 사항들은 사고조사에서 드러난 위법사례와 병합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07>